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

□ 쌍촌 공영주차장 취득(기부채납) [교통지도과]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합 계			1		1,715				1	1 (1,424.5)	1,715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신·증축 등)	토지	1	1 (1,424.5)	1,715				1	1 (1,424.5)	1,715	기부 채납
		건물										
		기타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

○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재산표시				취 득 대상수량	추정 가액	취득사유	비고 (주관부서)
구분	지목	소재지	수량 (면적)				
토지	주차장	쌍촌동 1401	1 (1,424.5)	1	1,715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교통지도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5년 6월
제 출 자 서 구 청 장

1. 제안사유

- 쌍촌 공영주차장 취득(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관리하고자 함.

2. 관리계획 주요내용

-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공할 사업시행자에게 용도폐지한 공원 및 도로 부지 일부를 양여하였고,
-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주차장을 관리청인 서구청이 취득(기부채납)하고자 함.

3. 취득대상 재산현황

- 쌍촌 공영주차장 취득(기부채납)
 - 취득부서 : 교통지도과
 - 사업명 :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4. ~ 2025.
 - 사업시행자 : (주)하나자산신탁
 - 재산명 : 쌍촌 공영주차장
 - 위치 : 쌍촌동 1401
 - 규모 : 1,424.5m², 48면(무료이용)

4. 제안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참고자료】

- 관계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요구서(사본)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쌍촌 공영주차장



□ 2025년 제3회 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전	쌍촌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주 문	○ 원안대로 의결함 < 심의대상 > ○ 사 업 :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사업 ○ 사업기간 : 2024. ~ 2025. ○ 위 치 : 쌍촌동 1401 (재산관리관:교통지도과) ○ 면 적 : 1,424.5㎡, 48면(무료이용) ○ 요구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쌍촌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사 유	○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유 발생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25. 6. .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심의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구 분	성 명	서 명	
			가	부			가	부
위 원 장	부구청장	백 남 인	백남인		위 원	홍진석	홍진석	
부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전 영 채	전영채		위 원	김수민	김수민	
위 원	회계정보과장	정 인 국	정인국		위 원	오영란	오영란	
위 원	도시공간과장	강 우 진	강우진		위 원	김여원	김여원	
위 원	건설과장	이 승 구	이승구		위 원	황승국	황승국	
					위 원	심 혁	심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구서

구 분	취득 및 관리계획	주관부서	회계정보과	일련번호	2025-03
심의안건	쌍촌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심 의 요 구 내 용	○ 사 업 :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사업 ○ 사업기간 : 2024. ~ 2025. ○ 위 치 : 쌍촌동 1401 (재산관리관:교통지도과) ○ 면 적 : 1,424.5㎡, 48면(무료이용) ○ 요구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쌍촌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사 유	○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공할 사업시행자에게 용도폐지한 공원 및 도로 부지 일부를 양여하였고, ○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주차장을 관리청인 서구청이 기부채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월
교통지도과장 배 석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 귀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

☐ 의결주문

- 쌍촌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심의사유

-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공동주택이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공할 사업시행자에게 용도폐지한 공원 및 도로 부지 일부를 양여하였고,
-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주차장을 관리청인 서구청이 기부채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

☐ 재산목록(대상 토지)

(단위 : m², 백만원)

재산명	소재지	지목	면적	추정가액	사용내역
쌍촌 공영주차장	쌍촌동 1401	주차장	1,424.5m ²	1,715	48면(무료이용)

☐ 관련법령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의 업무)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검토의견

- 주차장 면적이 1,424.5m²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